

##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-0316호

「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5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### 「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, 헌법 제23조 ‘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 지급’을 보장하기 어려움. 현 경제 상황을 고려,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현행 대비 5.2%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준을 높이고자 함.

#### 2. 주요개정내용

가. 적용시점 : 2023. 1. 1 ~ 차후 개정시까지

나. 보상금 단가 수준 : '22년 대비 5.2% 인상

다. 재검토 기한 :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저작권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
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
- 전자우편 : bera05@korea.kr
- 팩스 : 044-203-3466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cst.go.kr>) 『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(전화 044-203-248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「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 개정안 1부.

붙임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. 끝.